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627호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01호 무주부동산 공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06호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09호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10호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11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보수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 3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12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 인력 채용 공고 3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21호 인천광역시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공	고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01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3월 14일 ~ 2008년 9월 14일 (6개월간)
2. 신고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0~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선 (임시지번)	지 목	면적(㎡)	비 고
1	왕길동	622번지 지선 (622-1)	도로	147	
2	왕길동	622번지 지선 (622-2)	도로	671	
3	왕길동	622번지 지선 (622-3)	도로	81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적용에 대한 규정(부칙)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복지서비스과장, 전화:560-4973)에게 서면 및 팩스(560-43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정신보건법」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8. 「한부모가족지원법」
 9. 「영유아보육법」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각 시설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임면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부신청) 종사자 장려수당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사자 장려수당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시설에서 매월 급여지급 시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종사자의 임용 및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종사자 장려수당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법률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

시 설 명					시설장성명		
소 재 지					연 락 처		
임용 또는 퇴직내용	직종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호 봉	임용일	퇴직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시설장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임용자의 경우 이력서 사본 1부.
2. 퇴직자의 경우 사직원 사본 1부.
3.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별지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2.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정 수당지급
3. 교부신청금액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종사자장려수당	산 출 내 역	비 고
()월 청구액		①-②	
금월소요액(①)			
전월잔액(②)			퇴직자 반납액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50
40
30

시설명 (직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직인)

(인)

(〇〇은행)

※ 첨부서류 :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별지제3호서식]

보조금 집행행정산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정 수당지급

2. 집행월 : 년 월

3. 집행현황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 세부집행내역 : 증빙서 별첨

분 야	지 급 인 원	지 급 액	지 급 일	비 고
종사자 장려수당	○○○외 ()명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500 400 300

제출자 : 시설명 (인)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개인별 지급내역서(계좌입금의뢰서 등)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등이 2007. 5. 11 및 2007. 5. 7 각각 개정되었기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공무원,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일치시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개정
 - 명예식품감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민신고보상금 ⇒ 신고포상금
- 기금심의위원 명문화
 - 공무원 ⇒서구 공무원
 - 관련자 ⇒ 관련단체 대표자
- 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내용 신설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중 일부사항 신설
 - 기금 지출금액 변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50%이상 변경시 구 의회 승인 절차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직위 변경
 - 기금운용관 (주민생활지원국장 ⇒ 기금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당해업무담당주사 ⇒ 기금업무담당)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위생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TEL:560-4374, FAX:560-4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호중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중 “주민신고보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조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8.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9.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

제7조제4항제1호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식품위생관련자”를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8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당해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_____ _____.	제5조 (기금의 용도) _____ _____.	제5조 (기금의 용도) _____ _____.	제5조 (기금의 용도) _____ _____.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u>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식품</u> <u>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u>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식품</u> <u>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u>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식품</u> <u>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u>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식품</u> <u>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u> <u>식품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u>	2. _____ <u>소비자</u> <u>식품위생감시원</u> _____	2. _____ <u>소비자</u> <u>식품위생감시원</u> _____	2. _____ <u>소비자</u> <u>식품위생감시원</u> _____	2. _____ <u>소비자</u> <u>식품위생감시원</u> _____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u>주민신고보상금</u></u> <u>지원</u>	4. _____ <u>신고포상금</u> ---	4. _____ <u>신고포상금</u> ---	4. _____ <u>신고포상금</u> ---	4. _____ <u>신고포상금</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u>	8. <u>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u>	8. <u>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u>	8. <u>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u>
<신 설>	9.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u>	9.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u>	9.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u>	9.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u>
제7조(설치 및 구성)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④ _____ _____.	제7조(설치 및 구성) ④ _____ _____.	제7조(설치 및 구성) ④ _____ _____.	제7조(설치 및 구성) ④ _____ _____.
1. <u>인천광역시</u>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1. <u>인천광역시 서구</u> _____	1. <u>인천광역시 서구</u> _____	1. <u>인천광역시 서구</u> _____	1. <u>인천광역시 서구</u> _____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u>식품위생관련자</u>	2. _____ _____ <u>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u>	2. _____ _____ <u>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u>	2. _____ _____ <u>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u>	2. _____ _____ <u>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u>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_____ _____.	제11조(위원회의 기능) _____ _____.	제11조(위원회의 기능) _____ _____.	제11조(위원회의 기능) _____ _____.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u> <u>관한 사항</u>	4. <u>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u> <u>관한 사항</u>	4. <u>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u> <u>관한 사항</u>	4. <u>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u> <u>관한 사항</u>
<신 설>	5.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5.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5.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5.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u>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암·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신 설>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0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 ----- ----- <u>기금담당과장</u> ----- <u>기금업무담당</u>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지침 및 융자지침 시달과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사항 개정에 따라 융자신청,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기금의 사용범위 정립, 대출금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한도,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따라 변경
- 식품진흥기금 융자후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 조항 신설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 등 지침에 따라 버리 서식 재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3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244) TEL:560-4374 FAX:560-4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중 “조례 제14조”를 “조례 제17조”로 한다.

제4조중 “조례 제14조”를 “조례 제17조”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용자한도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업종별 용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업종별 용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제6조제4항제1호중 “2월”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8조중 “연리 3퍼센트(확정금리)를”을 “별표1 을” 로 한다.

제9조를 제9조의1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 등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1(종전의 제9조)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자조건 및 범위

1. 용 자 조 건

(단위 : 천원)

구 분	대출한도	이자율 (%)	대출 기간	상환방법	담보 조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은행 여신 규정 준수
화 장 실 개 선 자 금	10,000	1%	3년	3년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20,000	3%	3년	3년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소 시 설 개 선 자 금	5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00,000	3%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용 자 범 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만 가능
- 화장실 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용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범위내 가능
-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 장비구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시설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별지 제1호 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 청 인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업 소 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체규모	⑦ 영업장총면적	m^2	⑧ 자산총액	천원
대 상 업 종	⑨ 업 종	·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 기 타(화장실)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⑩ 실소요 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⑫ 비율 (⑪/⑩)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류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 정 은 행	
담당자	담 당 과 장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시 설 개 선 용 자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⑤ 영업장총면적	㎡ (평)		
	⑥ 계 획 내 용	자세히 기록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⑦ 시 공 업 체			
자 금 용 자	⑧ 실 소 요 금 액	⑨ 용 자 신 청 금 액	⑩ 비 율 (⑨ / ⑧)	⑪ 비 고
신 청 내 역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공사견적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1. 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용자금은
☐ 6개월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귀청에 사전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 ① 시설개설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경우
 - ③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단, 영업자 지위승계시 가족일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모범음식점이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3.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후 15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
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앞면)

융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	업 소 명		허 가 번 호	
	업 종		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	대 지		건 물 규 모	
	영업장면적	m ²	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				

(뒷면)

시설개선 신청시 사진(신청일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개선대상은 시설개선별 구체적(명칭별)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시 설 개 선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용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용자금의 용도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화장실시설개선()				
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착 공 일 자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완 공 일 자	년 월 일				
시 공 업 체 명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뒷면)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업 소 전 경)

(개 선 완 료 시 설)

※시설개선별 구체적(명칭별)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

1. 용자업소 현황

군·구	업종	업소명	대출자	소재지	용자용도	용자금액
						원
						원

2. 시설개선 추진사항

구분	착공일자	공사완료일	공사비 총액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장실			

3. 시설개선 이행사항

구분	시설개선 유무		미이행 사유 (*구체적으로)
	이행	미이행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장실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침에 의거 시설개선 완료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담당)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과장)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관리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			
영업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	총면적 : m ² / (영업장: m ² , 조리장: m ² , 화장실: m ²)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 정 일	
융 자 신 청 일		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		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융 자 용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자신청)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용자신청) ----- ----- -----	제2조(용자신청) ----- ----- -----	제2조(용자신청) ----- ----- -----	제2조(용자신청) ----- ----- -----
1.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생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17조 ----- -----.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17조 ----- -----.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17조 ----- -----.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17조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4조에 의한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7조에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7조에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7조에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7조에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용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용자신청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조건 및 용자금액을 정한 기금용자 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결정 통보)----- ----- ----- -----별지 제5호서식----- -----.	제5조(용자결정 통보)----- ----- ----- -----별지 제5호서식----- -----.	제5조(용자결정 통보)----- ----- ----- -----별지 제5호서식----- -----.	제5조(용자결정 통보)----- ----- ----- -----별지 제5호서식----- -----.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용자한도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업종별 용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용자한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용자한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용자한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용자한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2,000만원 이내
4. <신 설>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이내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이내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이내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이내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 3. (생략) <신 설>	1.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인 경우 6개월)----- -----	2. ~ 3. (현행과 같음)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8조(대출금리) 기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 (확정금리)를 적용한다.	<신 설>	제8조(대출금리) ----- 별표 1을----- -----.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시설 개선 자금 등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 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 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 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1(사후관리)----- -----별지 제8호서식 -----.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심의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1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보수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도로보수원 신규채용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03. 24 ~ 03. 28 (09:00~18:00)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나. 장 소 : 서구청 건설과 치수관리팀(4층)

2. 채용예정인원 : 1명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1차) : 접수받이 뚜껑 60초들고 있기(서류 전형 합격자)

다. 면접시험(2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1차 면접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결정

- 상기사항에 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1명)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968.01.01. ~ 1955.12.31일까지 출생자

나. 자격요건

①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거주

② 공고일 현재 신체건강하고 도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남자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cm × 4.5cm) 2매 첨부

- ②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
④ 자격증(면허) 사본 및 경력증명서 1통(소지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⑥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⑦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①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사진부착)
②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신원조회용) 각 2통
③ 채용신체검사서(국 · 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1통

6. 시험구분 및 일정

구분 시험별	시험일정	장 소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1차	2008.04.10(목) 10:00	심곡동 280번지 자재적치장 내	
면 접 시 험 2차	2008.04.15(화) 14:00	서구청 건설과(4층)	
최종합격자 발표		서구청페이지 및 개별통보 병행	2008.04.18(금)

7. 선발방법**가. 가점부여**

다음 자격 조건 중 최고 점수 1종 하나

① 건설관련 토목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3년 이상 : 3점
- 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② 운전자격 면허가 있는 자

- 보통면허 1종 소지하고 운전가능 : 1점

③ 공고일 3개월 이전에 서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1점)

⑤ 국민기초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점)

나. 동점자 처리기준

① 1순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모자가정

② 2순위 :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③ 3순위 : 연령이 많은 자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력측정검정 및 면접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수험표 및 신분증이 없으면 모든 시험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시험일정, 장소 및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7일전에 별도 공고함.

9. 시험관련 문의처 : 서구청 건설과 (☎032-560-453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2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 공고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모집부분 : GIS DB(하수, 도로, 녹지, 교통 분야)입력 전문기술자
2. 채용기간 : 채용일 ~ 2008년 12월31일
3. 모집인원 : 1명
4.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1985.01.01 ~ 1975.12.31일까지 출생자
 - 나.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거주
 -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라. 다음 자격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자
 - 1) GIS 관련학과 2년 이상의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 GIS관련학과 : 지리정보·토목·지적 관련과
 - 2) 정보처리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이상 소지자(1개이상)

5. 가점부여

다음 자격 조건 중 최고 점수 1중 하나

가. GIS 관련프로젝트 및 연구 수행경험 1년 이상인자 (+4점)

나. GIS S/W, ORACLE 교육이수자(+1점)

다. CAD 자격증 소지자 (+2점)

라. 동일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1년이상 ~ 2년미만 : 2점

- 경력 2년이상 : 4점

6.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A4 1장) 1부

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 지참

마. 교육이수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8.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제출기간 : 2008.03.24(월) ~ 2008.03.28(금) (09:00~18:00)

※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10.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치수관리팀**11. 면접일 : 2008. 04. 08(화) 10:00**

※ 서류합격자 면접 및 장소 개별통보

12.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04. 18(금)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13. 채용관련 문의처 :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032-560-453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21호

인천광역시서구 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푸른희망 서구21”이 그간의 의제작성 추진을 완료하고, 수립된 의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함.
-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 개정
-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며, 서구의회 의원 및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둠.
-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푸른희망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하고 “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를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호와 같은조 제3호중 “푸른희망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 제21”로 한다.

제4조제1항중 “100인”을 “150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감사) ①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 대표가 임명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중 “푸른희망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푸른희망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한다.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수당과 여비) 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u>푸른희망 서구21</u>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u>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푸른희망 서구21</u>"이라 함은 서구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푸른희망 서구 21</u>의 작성 및 실천추진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푸른희망 서구21</u>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생략)	<u>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 -----<u>푸른희망 서구의제21</u>----- -----<u>푸른희망 서구의 제21 실천협의회</u>----- -----. 제2조(정의) ----- ----- 1. "<u>푸른희망 서구의제21</u>"----- ----- ----- -----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 ----- 1. <u>푸른희망 서구의제21</u>----- ----- 2. (현행과 같음) 3. <u>푸른희망 서구의제21</u> -----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u>10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u>푸른희망 서구21</u> 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구의회 의원, 기타 전문가 등 각 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신설> ④(종전의 제3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 ----- ----- ----- <u>150인</u> ----- -----. ② ----- <u>푸른희망 서구의제21</u> ----- ----- ----- ----- -----. ③ <u>당연직 위원은 관련분야 살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생략) ②운영위원회는 <u>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등 20인 이내로</u>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u> ----- -----. -----.
제10조(분과위원회) ①(생략) ② <신설> ③(종전의 제2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1 <신 설>	제10조의1(감사) ① <u>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u> ② <u>감사는 협의회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u>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협의회는 “푸른희망 서구21”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 “푸른희망 서구의제21”----- ----- -----.
제18조(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검토 분석하여 “푸른희망 서구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 ----- “푸른희망 서구의제21”-----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신 설>	제18조의1(수당과 여비) ① <u>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